

#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( 의안번호 제498호 )

## 심 사 보 고 서

1998. 8.

총 무 위 원 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8. 18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성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1998. 8. 19
-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8. 25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정부의 지방행정기구·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본청 산업과와 축산과를 농촌지도소와 통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.

### 3. 주요골자

- 명칭변경  
- 농촌지도소 → 농업기술센터
- 분장사무 조정  
- 본청 산업과와 축산과가 농촌지도소로 통합됨으로써 사무분장 조정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정부의 지방행정기구·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본청 산업과, 축산과를 농촌지도소와 통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려는 내용과 과의 명칭변경으로 관련된 다른 조례 변경을 부칙에 명시한 것으로 1차산업의 행정수요를 감안한 기구조직의 일원화 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안 제4조 소장의 직급을 4·5급 농업, 지도직 복수로 할 용의와 안 제5조의 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없는지
- 답 :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없어 현재로서는 어려우며,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불가능
- 문 : 덕선리 소재 농업기술센터와 현 농촌지도소 위치가 이원화 되어 있어 일원화 할 용의는
- 답 : 농업기술센터(덕선리 소재)에는 기술직을 근무토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.
- 문 : 읍면상담소 존치방안과 금년 말까지 존치할 용의는
- 답 : 상담소는 지도소 본청에 집무토록 하고, 읍면상담소는 금년 말까지 존치여부는 차후 검토하겠음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1998. 8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